

제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('24.2.21.),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대부업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의결

- 금융위원회(이하 '금융위')는 '24.2.21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(이하 '협회')와 협회장 등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였다.
 - 협회는 금융감독원 검사('22.9.21. ~ '22.10.7.) 당시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검사를 방해하였으며,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도 수 차례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.
 - 이에 대해, 금융위는 협회에 대해서는 '기관경고', 협회장에 대해서는 '문책경고' 조치를 의결하였으며, 관련 보조자에 대해서는 '주의적 경고'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	책임자	과 장	전수한 (02-2100-2510)
		담당자	사무관	성종현 (02-2100-2511)
<공동>	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	책임자	국 장	홍석린 (02-3145-8270)
		담당자	팀 장	박운규 (02-3145-8272)